

통일후 독일의 지방재정

개편사례

이 방 식 / 전주대학교 교수

I. 序

분단이후 55년만에 햇볕정책의 성과로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남북관계는 대결구도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앞으로 남북한간 안정적이고 상설화된 대화가 이루어지고 경협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남한 역시 베를린 선언을 기초로 한 대북경협을 비롯 각 분야별 교류협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북한이 개방되면서 점진적으로 민족통일의 염원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등 각 분야별 통일에 대비한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재정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통일의 실현과 함께 북한지역에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지역에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적 기반조성이 선결조건이다. 통일시대 북한 지방재정의 자율적 기반조성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통일에 대비한 지방재정 차원의 대안책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통일후 독일의 지방재정 개편내용과 문

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독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낙후된 동독지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서독지역 지방정부도 참여하였다. 전통적으로 상하위 정부간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동위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특히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서독지역 지방정부가 통독후 동독지역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이 상하위 정부간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만 채택하고 있었을 경우 연방정부는 독자적으로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재원을 부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연방정부의 재정적 활동영역은 축소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통독 초창기부터 동서독 지역에 적용한 것은 아니다. 동서독 지방정부간 현저한 재정력의 격차가 일정 기간내에 극복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1994년 12월말까지 유보되었고 그 대신 한시적으로 통일기금이 조성되어 운용되었으며 통일기금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부담하였다. 즉 통독후 동서독 지방정부간

재정력이 균등화될 때까지는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1994년말까지 서독지역 지방정부는 연방과 함께 공동으로 통일기금조성에 참여하여 동독지역을 지원하였다. 1994년말 통일기금을 통한 한시적 재정지원이 끝남에 따라서 1995년초부터는 개편된 지방재정조정법에 따라 동서독 주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이 수행되고 있다.

본 논고의 목적은 통일시대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통독이후 과도기(1990년 10월 통독 직후부터 수평적 재정조정 대신 설립, 운용된 통일기금의 역할이 종료된 1994년말까지) 독일 지방재정제도의 개편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일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시대 지방재정제도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데 일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례분석은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지역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가능케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II. 통독과 지방재정제도

1. 통독전 지방재정제도

1-1. 기능배분

독일은 연방제국가로서 통독이후 동독지역 5개주가 서독지역에 편입되어 현재 16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주헌법을 가지고 의회, 정부 및 법원을 독자적으로 관할하고 있고 국가적 통일성을 필요로하는 연방정부 기능 이외의 기능에 있어서는 각 주정부가 반주권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연방제 국가로서 독일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라는 3계층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분권형의 국가로서 독일의 경우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의 비중은 60 : 40 정도이고 기능배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각 상하위정부는 부여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스스로 재정지출을 부담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독일헌법 제 104조 a항). 독일헌법 제 28조에 의하면 우선 기초자치단체(Gemeinde)는 학교 운영문제를 비롯해서 문화, 지역 교통, 지역 공공시설의 설립 및 운영, 청소년문제, 지역의 에너지 공급문제, 쓰레기문제, 오폐수정화 기능등을 부여받고 있고 지역내 생활보호

대상자와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상당부분 재정부담을 하고 있다. 주정부의 기능에 대해서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 30조). 동규정에 따르면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기능으로 규정된 기능이외의 기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의 주요기능으로는 예컨대 초중등학교 운영과 대학운영 및 경찰업무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문화분야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교부금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나 주정부와는 달리 연방정부는 국방이나 외교, 통화신용정책등과 같이 업무 특성상 국가적 통일성을 필요로 하고 연방전지역에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연방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 중 3분의 1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교통분야에 있어서 연방관할 고속도로, 연방철도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제정책, 연구, 교육,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다.

1-2. 독일의 세제와 재정수입 개관

독일의 세제 및 재정수입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각 상하위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에는 조세수입, 세외수입, 공기업 수입이나 부동산 매각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통한 재정수입, 채무수입, 교부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각 상하위 재정수입의 약 77%정도는 조세수입이다(1992년도 기준). 따라서 조세수입 배분방법은 각 상하위정부의 재정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일은 상하위정부간 세원의 분리방법과 공동이용방법을 혼합한 혼합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공동세로서 상하위정부간 일정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기타 세수입은 분리방법에 따라서 상하위 정부에 각각 귀속된다. 분리방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세목으로는 관세(유럽연합의 재원으로 이양), 도로화물운수세, 커피세, 연초세, 설탕세, 화주세, 석유세, 자본거래세, 보험세, 어음세, 샴페인세, 조명세, 茶稅 등을 들 수 있다. 州稅에는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소방세, 자동차세, 경마 및 복권세, 맥주세, 도박세가 포함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는 토지세, 토지취득세, 영업세, 음료수세, 유흥세, 영화관입장세, 犬稅, 어업 및 수렵세, 주류업 허가세가 있다. 독일의 세

수입 규모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으로는 총 세수입중 약 47%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로서 총세수입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또 다른 주요 세목으로는 담배세, 화주세, 석유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세목들은 특별 소비세이면서 간접세에 속한다.

다음 <표 1> ~ <표 3>은 1986년부터 통독후 1992년까지 상하위정부별 주요 재정수입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총재정수입에서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연평균)은 연방정부의 경우 88.8%로서 가장 높고 주정부는 68.7%, 기초자치단체는 32.7%로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낮다. 총재정수입에서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정부의 경우 연평균 12.9%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연평균 21.2%로서 하위정부에 있어서 그 비중이 크다. 연방정부에 대한 하위정부의 교부금규모는 대단히 미약하다.

<표 1> 연방정부의 주요 재정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마르크)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조 세 수 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208,909	217,021	220,265	247,131	258,833	317,874	352,861
하위정부로부터의 교부금	438	414	444	489	466	530	1,303
기타 재정수입 (임대료, 이자수입, 수수료 등)	25,007	18,565	13,001	18,421	21,434	24,420	29,121
구동독지역 재정수입 (1990년도 3분기 및 4분기)	-	-	-	-	47,919	-	-
자 본 수 입 (실물자산매각, 공기업지분매각 등)	3,891	5,133	5,676	3,671	3,446	5,747	4,515
합 계	238,245	241,133	239,386	269,712	332,098	348,571	387,800

자료 : BMF(1993)

<표 2> 전체 주정부의 재정수입추이

(단위 : 백만 마르크)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조세수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배분액, 재산세 등)	166,844	173,164	180,530	197,069	199,804	234,529	258,950
교부금 (연방정부, 기초자치단체, 통일기금 등)	25,046	26,262	26,989	29,551	29,536	71,695	74,308
기타재정수입 (임대료, 이자수입, 수수료 등)	31,144	31,203	32,234	33,775	35,773	44,905	49,143
자 본 수 입 (실물자산매각, 출자지분매각등)	13,395	13,781	13,984	14,688	15,126	27,725	25,587
합 계	236,426	244,410	253,737	275,083	280,239	378,917	407,988

주 : 1990년까지는 구서독 주정부통계치, 1991년부터는 구동독지역을 포함한 통계임

자료 : BMF(1993)

<표 3> 기초자치단체(Gemeinde) 재정수입추이

(단위: 백만 마르크)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조 세 수 입	58,704	59,725	63,589	68,019	69,034	77,980	86,532
교 부 금 (연방정부와 주정부)	34,024	35,775	36,719	38,833	41,109	67,919	69,175
기타재정수입(공기업, 이자수입, 수수료 등)	56,680	58,956	61,602	64,382	69,579	87,430	99,063
자본수입(자산매각 등)	21,347	22,201	23,138	24,743	26,035	38,424	39,206
합 계	170,755	176,657	185,048	195,977	205,757	271,753	294,030

주: 1990년까지는 구서독지역 통계치, 1991년부터는 구동독지역을 포함함.

자료: BMF(1993)

1-3. 상하위정부간 수직적 세수입 배분제도

독일의 경우 혼합방법에 의해 상하위
정부간 및 동위정부간 세수입을 배분하
는 바, 우선 제 1단계 세수입배분은 상

하위정부간 수직적 배분으로 징수된 세
수입이 분리방법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세수입과 지방정부의 세수입으로 귀속
된다. <표 4>는 1992년도의 세수입배
분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1992년도 연방, 주 및 기초자치단체간 세수입 배분내용

○연방 세수입

(단위: 10억 마르크)

내 용	규 모
연 방 세	100.6
공 동 세	256.3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122.8
-소득세 비정기소득	21.2
-부가가치세	109.1
-영업세 배분액	3.2
연방의 보정적 교부금	-4.0
합 계	352.9

주: 연방의 보정적 교부금은 및 유럽연합에 대한 재정지원금 342억 마르크 차감한 것임.

자료: BMF(1993)

○ 주세수입

(단위: 10억 마르크)

내 용	구 서 독	구 동 독	합 계
주 세	30.1	2.8	32.9
공 동 세	193.5	20.9	214.4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결산	115.0	7.7	122.7
-소득세 비정기분 및 법인세	21.6	-0.3	21.3
-부가가치세	53.1	13.5	66.6
-영업세 배분액	3.8	0	3.8
연방의 보정적 교부금	4.0	0	4.0
합 계	227.0	23.7	251.3

자료: BMF(1993)

○ 기초자치단체 세수입

(단위: 10억 마르크)

내 용	구 서 독	구 동 독	합 계
기초자치단체세	10.9	1.1	12.0
소득세배분액	40.6	2.7	43.3
영 업 세	37.2	0.7	37.9
합 계	88.7	4.5	93.2

자료: BMF(1993)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동세 수입은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총 조세 수입에서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세의 배분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법인세수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50%씩 배분된다. 소득세수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에 배분된다. 연방의회는 연방참여원의 동의 하에 소득세의 배분비율을 결정하는데 배분비율은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각 42.5%, 42.5%, 15.0%로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연방과 전체 주에 각각 65%, 35%씩 배분된다. 배분 비율은 경제상황에 따라 협상을 거쳐 결정된다. <표 5>는 상술한 독일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및 세수입 배분제도를 요약한 것이다.

1-4. 세출제도

독일의 지방정부재정의 일반적인 기

<표 5> 독일의 상하위정부간 기능 및 세수입 배분제도

구 분	기초자치단체	주 정 부	연 방 정 부	E U
조	공동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부가가치세
세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소방세, 자동차세, 경마세 및 복권세, 맥주세, 도박세	도로화물운수세, 연초세, 커피세, 설탕세, 화주세, 석유세, 자본거래세, 보험세, 어음세, 샴페인세, 조명세, 다세	관세, 부가가치세
수	분리 방법에 의한 세원	토지세, 토지취득세, 영업세, 음료수세, 유흥세, 영화관입장세, 견세, 어업 및 수렵세, 주류업 허가세	연초세, 커피세, 설탕세, 화주세, 석유세, 자본거래세, 보험세, 어음세, 샴페인세, 조명세, 다세	국민총생산 일정액 자원, 농산물가격 균등관세수입, 기타 재정수입
입	주요 기능	학교, 문화, 교통, 저소득층 재정지원 보건위생, 에너지공급 기타 공공시설등	문화, 교육,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 경찰업무 등	연구, 에너지 등

주: 독일은 EU의 회원국으로서 기능도 함께수행하고 있음
 자료: BMF(1993)

<표 6> 통독전 서독 지방정부 기능별 지출규모의 추이(1987~1989)

(단위: 10억 마르크, %)

구 분	1987		1988		1989	
	지출규모	구성비	지출규모	구성비	지출규모	구성비
1. 일반행정	13.479	6.0	13.981	6.1	14.037	5.9
2. 치안	22.132	9.8	22.617	9.8	23.246	9.7
3. 교육 및 연구	70.369	31.3	72.178	31.4	74.170	31.1
4. 문화	3.609	1.6	3.709	1.6	3.926	1.6
5. 사회보장 및 복지	18.012	8.0	18.835	8.2	20.489	8.6
6. 보건 및 체육	10.564	4.7	10.589	4.6	11.375	4.8
7. 주택 및 생활환경	10.499	4.7	9.768	4.2	9.620	4.0
8. 산업지원	11.139	5.0	11.284	4.9	12.015	5.0
9. 교통통신	8.617	3.8	8.504	3.7	8.771	3.7
10. 기타 경제활동지원	53.944	24.0	55.806	24.3	54.198	24.4
11. 기타	2.548	1.1	2.795	1.2	2.910	1.2
합 계	224.910	100.0	230.066	100.0	238.757	100.0

자료: BMF, Finanzbericht 1994, S. 306 u. S. 307

능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공급과 투자지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서독 지방정부의 기능별 지출규모의 추이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지방정부의 각 기능별 지출규모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 연구, 경제활동지원,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 및 생활환경, 보건 및 체육 각종 문화활동, 교통통신 및 산업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전체 지방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 및 연구분야의 예산이 전체예산의 31.0%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24.0%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 역시 타 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 및 연구분야의 예산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교육 및 연구의 주기능이 지방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1-5. 지방재정조정제도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재정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재정조정 개념을 넓게 이해할 경

우 재정수입의 배분뿐만 아니라 기능배분과 기능배분으로 인한 지출부담의 배분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의 재정조정은 좁은 의미의 재정조정으로서 재정수입의 배분, 특히 조세수입의 배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독일의 재정수입배분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 즉 상하위정부간 수직적인 재정조정과 동위정부간 수평적인 재정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직적 재정조정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재정조정을 의미하고 수평적인 재정조정은 동위 정부간 재정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평적 재정조정과 수직적 재정조정은 독일의 경우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세분화 시킬 수 있다.

가) 제 1단계 재정조정(연방정부와 전체 주정부간 수직적 조세수입배분, 제 1차 수직적 재정조정): 독일의 경우 세원배분방법에 있어서 세원의 분리방법과 공동이용방법을 혼합한 혼합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혼합방법에 따라서 공동세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연방과 지방간에 세수입을 일정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반면 기타 세수입은 분리방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각

각 배분된다. 연방정부의 세수입으로서 연방세는 관세, 도로화물세, 연초세, 커피세, 설탕세, 화주세, 석유세, 자본거래세, 보험세, 어음세, 샴페인세, 조명세, 다세등이 있다. 또한 주정부의 세원으로는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소방세, 자동차세, 경마 및 복권세, 맥주세, 도박세가 있다. 이러한 연방세와 주세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서 게마인데세를 들 수 있는데 게마인데 세목에는 토지세, 토지취득세, 영업세, 음료수세, 유흥세, 영화관입장세, 견세, 어업 및 수렵세, 주류업허가세가 포함된다. 상실된 세목의 세수입은 세원의 분리방법에 따라 각각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게마인데의 재정 수입이 된다. 그러나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공동세는 배분비율에 따라 각각 공공기관에 배분된다. 공동세수입은 총조세 수입중 약 75%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동세 배분 방법을 보면 우선 법인세수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50%씩 배분된다. 소득세배분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외에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도 참여한다. 총 소득세수입중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42.5%가 배분되며 게마인데에는 15.0%가 배분된다. 부가가치세는 연방과 전체주에 각각 65%, 35%씩 배분된

다.

나) 제 2단계 재정조정(주 상호간 수평적 부가가치세수입 배분, 제 1차 수평적 재정조정): 제 2단계 재정조정은 주 상호간 수평적 부가가치세 수입 배분으로서 제 1차 수평적 재정조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수입 배분과정은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단계에서는 세원의 공동이용방법에 따라서 1년 내지 3년기한으로 총부가가치세 수입중 연방정부에 65% 전체주에 35%가 배분된다. 둘째단계에서는 全體州에 배분된 35% 세수입중 75%는 주민수 기준에 따라 각 州에 배분한다. 셋째단계에서는 全體州에 배분된 35% 세수입중 25%를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배분한다.

다) 제 3단계 재정조정(州 상호간 조세수입의 재배분, 제 2차 수평적 재정조정): 제 1단계와 제 2단계의 재정조정을 수행했다고 할지라도 주 상호간에는 재정력격차가 있을 수 있다. 제 3단계 재정조정은 이러한 주 상호간 재정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 상호간 재정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에서는 우선 각 주의 재정수요와 재정

력을 비교해서 재정력이 재정수요보다 큰 주는 재정조정액을 부담하게 되고 재정수요가 재정력보다 큰 주는 재정조정액 수취주가 된다. 여기서 재정력을 측정하는 개념은 조세력측정치(Steuermesszahl)이고 재정수요를 측정하는 개념은 재정조정측정치(Ausgleichsmesszahl)이다. 주의 조세력측정치는 그 주의 조세수입에서 항구를 끼고 있는 주에서 항구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부담을 보상해주기 위한 일정보상액을 차감한 후 각 주에 속해있는 계마인테 세수입을 합해서 산출하는데, 계마인테 세수입의 경우는 해당 세목의 세율의 50%만을 계상한다. 재정조정측정치는 우선 연방의 평균 1인당 세수입을 계산하고 여기에 해당 주의 주민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재정조정측정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브레멘 주나 함부르크 주와 같은 도시형 주의 거주민 수는 그들의 실제 거주민수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가중치를 고려한 거주민 수를 의미한다. 도시형 주에서는 거주민수와 인구밀도의 증가와 함께 사회간접시설을 위한 지출등의 특별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시형 주인 브레멘 주나 함부르크 주의 거주민 수는 135%로 그리고 기타 주는 100%로 평가된다.

주에 속해있는 계마인테에 있어서는 거주민수가 5000명까지는 100%로 평가되고 이 수치는 거주민수 5000명 단위로 점점 증가해서 거주민수가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는 125%, 100만명 이상인 시에서는 130%로 평가된다. 재정조정액을 배분받는 재정조정액 수취주와 재정조정액을 부담하는 재정조정액 부담 주의 재정조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1) 세수입 빈곤주의 조세력측정치가 재정조정측정치의 92%에 미달되는 경우 완전히 92%에 도달할 때까지 그 미달액 전액을 교부금으로 보충해 준다.

(2) 세수입 빈곤주의 조세력측정치가 재정조정측정치의 92%에서 100% 사이에 있을 경우 그 차액의 3/8만큼 조정되어 모든 주가 재정조정측정치의 최소한 95%에 도달할 때까지 조정된다.

(3) 재정조정액부담주의 부담액은 조세력측정치가 재정조정측정치를 능가하는 액수의 일정 백분율로 계산되는데, 조세력측정치가 재정조정측정치의 100%~102%에 있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재정조정액부담이 면제된다.

(4) 조세력측정치가 재정조정측정치의 102%~110%에 있을 경우 초과재정력의 70%가 재정조정 부담금으로 산

출된다.

(5) 재정조정축정치 110%를 증가하는 조세력축정치는 그 증가하는 조세력축정치 100%가 부담금이 된다.

라) 제 4단계 재정조정(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제 2차 수직적 재정조정): 독일의 제 4단계 재정조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제 2차 수직적 재정조정을 의미하고 제 1단계에서 제 3단계까지 재정조정결과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주정부간 재정력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재정조정 형태로서는 연방의 보정적 교부금을 들 수 있다. 연방

의 보정적 교부금은 각 주의 변화하는 재정수요를 고려해서 주상호간 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연방정부의 보정적 교부금배분의 전제 조건은 주의 성취능력이 취약한 경우이다. 성취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은 주정부의 재정지출부담과 재정수입을 고려해서 주상호간 재정조정을 수행한 결과 주의 재정수입이 전체 주재정수입의 평균 이하를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연방 정부는 재정력이 취약한 그러한 주에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표 7>은 1992년도 구서독지역 재정조정내용으로 1992년 경연방의 보정

<표 7> 1992년도 독일의 주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내용

(단위: 백만 마르크)

州	수평적 재정조정전 재정력(%)	재정조정금 공여(-) 및 수취(+)	수평적 재정조정후 재정력(%)	연방의 보정적 교부금	최종적 재정력(%)
Baden-Wuerttemberg	107.3	-1,555	103.6	-	103.6
Bayern	100.0	-	100.0	-	100.0
Bremen	80.7	+530	95.0	429	106.6
Hamburg	100.7	-	100.7	-	100.7
Hessen	112.6	-1,993	104.4	-	104.4
Niedersachsen	90.3	+1,463	95.0	1,475	99.7
Nordrhein-Westfalen	100.9	-	100.9	-	100.9
Rheinland-Pfalz	90.6	+704	95.0	721	99.5
Saarland	85.8	+411	95.0	465	105.4
Schleswig-Holstein	91.0	+440	95.0	573	100.2
합 계	100.0	+/-3,548	100.0	3,662	100.2

자료: BMF(1993)

적 교부금은 37억 마르크로써 구서독지역 부가가치세수입의 2%정도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동독

한편 구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구동독의 경우 지방재정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나타내고 있는 구동독의 예산은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구동독 중앙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는 중앙정부예산, 지방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위한 지방예산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를 위한 사회보장예산이 구동독의 예산을 형성하고 있다. 구동독의 예산은 통합의 원칙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에 하급행정단위에 속하는 지방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구동독의 경우 계획경제체제의 운영 원칙에 따라서 중앙의 행정관서가 지방의 행정관서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행정체제와 예산운영방법에 있어서 상하 행정단위라는 종적인 관계만 존재할 뿐이며 동위 행정단위간 횡적인 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구서독의 주정부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구동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구동독의 예산수입에 대한 중심권한은 재무성이 가지고 있는 바, 재무성은 모든 정부 부서나 정부기관 및 지방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정부예산의 회계방법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예산회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기업이나 기금 그리고 특별회계 등의 독립채산제나 독립회계의 원칙등과 같은 제도는 발견되지 않는다. 중앙의 재정이나 지방의 재정 모두 지출항목의 구분없이 집계처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88년도기준 구동독의 예산은 2,700억 동독마르크이며 이는 동독 국민총생산의 3/4에 이르는 규모이다. 구동독 총예산중 73%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출되고 20.0%는 지방의 행정기관에서 그리고 7.0%는 사회보장예산으로 집행되었다. 구동독 총예산중 중앙재정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구동독 정부의 재정수입은 크게 4가지의 중요한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즉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콤비나트나 개별기업에 대해 부과되는 부과금,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및 기타 이용자요금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즉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기업자본을 과표로 해서 부과되는 재산세와 유사한 “생산기금”이나 “상업기금” 등을 위한 부과금의 명목으로 징수된 재정수입이 대표적인 정부재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외에도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순이익세와 소비세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생산물에 대한 부과금,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기업에 의무적으로 할당되는 특수부과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수입측면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지방거래세, 재산세 및 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가 있고 모든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조세와 같은 부과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세율은 모든 근로자나 협동조합 종사자가 자신의 소득의 10.0%를 그리고 기업이나 콤비나트가 피고용자소득의 12.5%를 납부하여 사회보장세율은 총 22.5%가 된다.

구동독에서는 모든 종류의 사회보험을 단일한 항목의 사회보장기여금의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 통독후 지방재정제도

2-1. 통독 초창기

통독과정에서 체결된 두 번의 조약중 제 1차 조약은 1990년 5월 18일 연방의회에서 승인된 “동서독 통화, 경제, 사회동맹 창설에 관한 조약”이며 제 2차 조약은 1990년 8월 31일 승인된 “동서독간 통일을 위한 조약”으로서 제 2차 조약에서는 서독 헌법 제23조 제2항의 대동독지역에 대한 효력발효, 사회보장 및 법규조정등이 명시되어 있다.

통독후 구동서독지역에서 시행해야 할 재정제도에 대해서는 제1차 조약과 제2차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조약 제 3장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동독지역에도 서독의 재정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어야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제도 역시 몇가지 예외규정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서독의 제도가 동독지역에 적용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과 각 州간의 재정관계는 제2차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동독지역에 서독의 재정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동독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던 국가귀속방식의 재정체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결과가 개인에게 돌아가지도록 함으로서 구동독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었다.

예컨대 동독조세체계의 서독조세체계의로의 전환은 시장에서 발생한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 결과로서 이윤 및 소득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의미이며 개인 및 기업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전면적 실시가 곤란함으로서 경과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조세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과조치는 경제체제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다.

1990년 7월 1일부터 동독의 조세제도가 폐지되어 기업이나 개인자영업에 부과되던 과도한 조세부담이 제거되었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서독의 조세제도가 동독지역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통일 당시 동독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아 개인소득세부과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기업의 순이윤이 없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조세부과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조세부과는 법인의 자산평가, 손익계산서의 작성등 서독의 회계원칙에 따른 기업회계의 작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 기간동안 동독기업들이 서독의 회계원칙에 따른 기업회계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1990년 7월 1일부터 공동세인 부가가치세와 연방세인 주류, 커피, 차, 휘발유, 담배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1991년 1월 1일부터는 공동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주세인 상속 및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동독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투자촉진정책을 추진하였는 바, 과도기적으로 1991년말까지 투자할 경우 민간투자자는 투자액의 12.0%를 투자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1992년말까지는 민간투자자의 투자액의 8.0%를 투자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0년 12월 31일까지 서독의 기업이 동독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품목별로 부가가치세를 11.0%~5.5% 감면하였고 1991년 3월 31일까지는 6.0%~3.0%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였다.

통독 초창기 동독지역에 지방재정제도 도입관련 규정중 예외규정은 지방재정조정제도관련 규정이다. 예컨대 통독 이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구동서독지역

주정부간 커다란 재정력의 차이로 구동독지역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구동독지역 주정부들의 재정력이 구서독지역 주정부들의 재정력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가능하리라고 예상되는 1994년 말까지 독일 통일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즉 통일기금은 제 1차 통일조약 제 7조 제 3항에 따라 통독후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간동안 주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대신 비상수단으로 설립되어 운용되었다. 또한 구동독지역 州들이 부가가치세 수입의 수평적 배분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1994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민수를 고려한 모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통일기금은 구동독지역 주정부들과 구동베를린의 부족한 세수입을 보충해주기 위하

여 거주민수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구동독지역의 주정부들은 통일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였다. 독일통일기금으로부터 확보된 재원은 주로 구동독지역 주정부들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과 원금상환 및 재정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공여받은 재원중 60.0%는 구동독 주정부가 사용하였으며 40.0%는 구동독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되었다. <표 8>은 통독후 1990년부터 1994년까지 통일기금규모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통독후 초창기 통일기금은 1150억 마르크 책정되었으나 2차례에 걸쳐 증액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 통일기금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통일초창기 통일기금이

<표 8> 독일 통일기금 규모변화 추이

(단위: 10억 마르크)



<표 9> 통일조약 체결후 및 1991년 2월 28일자 주지사 협정 체결후 구 동독지역 주와 구 서독지역 주간 재정현황 비교

<p>■ 통일조약 체결후</p> <p>□ 1991년 2월 28일자 주지사 협정체결후</p>
--

주: 구동독 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 대비 구 서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 비교임.

과소책정되었음을 의미한다.

2-2. 동독지역 재정지원을 위한 주지사협정

통일초창기 예견되었던 동독지역 지방재정상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너무나 낙관적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동독지역 각 지방정부 및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해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연방정부 수상과 각 지방정부 주지사간 협의가 있게 되었고 협의결과 동독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조치가 취해졌다.

<표 9>는 구동독지역 지방정부들의

취약한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1년 2월 28일자 체결된 주지사협정에 따른 구동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 대비 구서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을 백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조약체결 당시보다 주지사협정이 체결된 후 구동독지역 재정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없었을 경우 구서독지역과 비교해서 연도별 재정력의 격차가 더욱 커졌을 것이다. 1991년도의 경우 통일조약에 따른 동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은 서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의 70%정도였으나 주지사협정 체결 후에는 88%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

<표 10> 통독조약 체결후 구동독지역 주들의 주민 1인당 채무규모추이

(단위: 마르크)

다. 또한 <표 10>은 통일조약을 체결한 후 구동독지역 주들의 주민 1인당 채무 규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당시인 1990년도 구동독지역 주민 1인당 채무는 6924마르크였다. 1991년도 통일초창기 동독지역에 대한 서독지역의 재정지원으로 주민 1인당 채무규모가 3,080마르크로 감소했으나 동독경제의 재건을 위한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채무규모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초창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동독지역 재정상황의 악화로 주지사협정이 체결된 결과 동협정에 의해 동독지역 주들의 재정상황은 개선될 수 있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민수에 따라 배분하는 부가가치세 수입 배분제도를 구동독지역에도

적용하였는데(그러나 재정력에 따라 배분하는 부가가치세 수입의 25%배분에 구동독지역 주들은 참여할 수 없었음) 그 배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10억 마르크)

연 도	1991	1992	1993	1994
규 모	+4.76	+4.48	+4.12	+3.69

- 연방정부의 통일기금 재원사용권한(통일기금의 15%)포기와 함께 동재원 동독 지방정부에 이양

(단위: 10억 마르크)

연 도	1991	1992	1993	1994
규 모	+5.2	+4.2	+3.0	+1.5

- 분야별 사업에 중점을 두는 동독재건 공동사업(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을 설립하여 사

회간접시설투자, 고용창출, 주택건설, 환경보호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동사업에 연방정부가 출연한 재원규모는 1991년과 1992년 2년동안 매년 120억 마르크로서 총 240억 마르크에 달한다. 그 중에서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유입된 재원은 119억 마르크로서 1991년의 경우 82억 마르크였고 1992년의 경우 37억 마르크였다.

2-3. 구조조정법 해지 및 통일기금 증액법에 의한 제1차 통일기금 증액

동독재건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일기금이 두차례에 걸쳐 증액되었는 바, 제 1차 증액은 1992년 3월 16일자 구조조정법 해지 및 통일기금증액법이 발효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313억 마르크가 증액되어 통일기금은 총 1463억 마르크에 달했다. 통일기금 제 1차 증액조치를 위한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 채무를 통한 재원조달방법은 제외되었다. 제 1차 통일기금증액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10억 마르크)

연 도	1992	1993	1994
규 모	+5.9	+11.5	+13.9

<표 11>에는 통일조약 체결 당시, 1991년 2월 28일자 주지사협정 체결 후 및 제 1차 기금증액이 이루어지게 된 후 구동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 대비 구서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을 백분비로 나타내고 있다. 제 1차 기금증액으로 구동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상황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4. 연방 재정건전화 프로그램 실천법에 의한 제2차 통일기금 증액

통독후 동독지역 주정부들의 취약한 재정상황이 여러번에 걸쳐 개선되었으나 1993년초 부터 다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통일기금의 규모가 감소하면서 동독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주정부들은 특별히 1994년부터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경제재건을 위한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구동독지역의 부채는 급증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3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연대협정을 위한 협상 및 1993년 4월 23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체결된 협정으로(이러한 협정결과는 연방 재정건전화프로그램 실천법으로 나타남) 동독지역 재정지원을 위한 제2차 통일기

<표 11> 통일조약, 통일기금 증액 및 연대협약 체결후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재정현황 비교

주: 구동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 대비 구서독지역주민 1인당 재정수입입

금의 증액조치가 있게 되었다. 제2차 기금증액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10억)

연 도	1993	1994
규 모	+ 3.7	+ 10.7

<표 11>은 제 2차 통일기금증액으로 동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이 다시 현저히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의 경우 동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은 서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의 99%를 나타내고 있고 1994년도의 경우는 동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이 서

독지역 주민 1인당 재정수입을 능가하고 있다. 통독후 초창기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에서는 구동독지역 주정부들의 재정은 1995년도부터 구서독 주정부들의 재정상황과 유사한 정도로 개선될 것이고 정상과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따라서 연대협정을 위한 협상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동독 지역 주들을 구서독지역 주들에게 적용되었던 재정조정제도에 포함시키는데 있었으며 통독후 동독 부채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있었다. 연대협약에서는 제 2차 통일기금 증액조치 뿐만 아니라 1994년 346억 마

<표 12> 연도별 통일기금 공여규모

(단위: 10억 마르크)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합 계
규 모	22.0	35.0	33.9	35.2	34.6	160.7

자료: BMF, 1994, S. 39

<표 13>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통일기금조성을 위한 연도별 보조금 규모

(단위: 10억 마르크)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연방정부	2.0	4.0	9.9	14.2	19.5
주 정 부	-	-	-	6.0	10.1

자료: BMF, Finanzbericht, 1994, S. 38

르크를 끝으로 통일기금을 통한 동독지역 재정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대해 결의가 있게 되었다. 그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 총부가가치세 수입중에서 州가 차지하는 배분비율을 37%에서 44%로 상향조정
- 구동독지역 州들을 부가가치세의 수평적 배분제도에 포함시킴. 특히 부가가치세수입의 보정적인 배분을 25%를 배분하는데 포함시킴으로서 재원확충에 도움이 됨.
- 구동독지역을 포함하는 독일 전체 주정부간 재정조정수행
- 동독지역 주정부들이 부족한 재원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방의 보정적 재정지원조치를 취함.

최종적으로 통일기금을 통한 재정지원규모는 <표 12>와 같다.

1990년도부터 1994년까지 공여된 통일기금규모는 총 1607억 마르크이다. 처음에는 1150억 마르크가 책정되었으나 점차 구동독지역의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57억 마르크가 증액되었다. 총기금중 657억 마르크는 구서독지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으로 연차적으로 조달되었다. 구서독지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서 조달되는 총보조금중 496억 마르크는 연방정부가 그리고 161억 마르크는 주정부가 부담하였다. 연도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기금조성을 위한 보조금규모는 <표 13>과 같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을 차감한 기금조성액 950억 마르크는 자본시장에서 채무를 통해 조성되었다. 채무비용중 50.0%는 연방정부가 담당하였고 50.0%는 주정부가 부담하였다. 구서독 지역 주정부의 채무비용 부담은 주정부가 배분받는 부가가치세수입 배분액을 연방에 양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매년 300억마르크 이상의 규모를 가진 구서독지역 주정부간 재정조정제도는 통일후 구동독지역 주정부들의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감안했을 때 계속 존속시킬 수 없는 제도였다. 구서독 지방재정조정법에 따라 통일후 즉시 구동독지역을 포함해서 재정조정을 수행했을 경우 재정조정을 위한 재원규모는 급증했을 것이고 그러한 재원은 모두 구서독지역 주정부들이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다른 대안책이 없는 상황에서 주상호간 재정조정을 대신해서 독일통일기금이 조성된 것이다.

2-5. 1995년이후 재정조정

통일기금의 역할은 1994년말까지 끝나고 1995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재

정조정법에 따른 주정부간 재정조정이 수행되고 있다. 개편된 규정에 따라 1995년부터 동독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약 560억 마르크 정도로 추산되었고 동독지역 주는 독자적인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등 경제제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의 핵심은 베를린을 비롯 동독지역 주정부들이 서독지역 주들에게 적용되었던 주정부간 재정조정제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이며 동서독 주정부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1992년 5월 27일자 연방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브레멘(Bremen) 주와 자알란트(Saarland) 주 재정의 건전화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1994년부터 유효). 개편된 재정조정제도의 기본 골격은 기존의 제도와 일치한다. 구동서독 지역간 재정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조정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의 재정력측정치(Finanzkraftmesszahl, 이하 FKM)가 재정조정측정치(Ausgleichsmesszahl, 이하 AMZ)의 100%~101%에 있는 경우 초과재정력의 15%가 재정조정부담금이 된다.

(2) FKM이 AMZ의 101%~110%에 있는 경우 초과재정력의 66%가 재정조정부담금이 된다.

(3) FKM이 AMZ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재정력의 80%가 재정조정부담금이 된다.

(4) 재정이 빈곤한 州의 FKM이 AMZ의 92%에 미달하는 경우 92%에 도달할때까지 그 미달액 전액을 교부금으로 보전해준다.

(5) 재정이 빈곤한 州의 FKM이 AMZ의 92%~100%에 있는 경우 그 州는 그 차액의 3/8만큼 재정조정되어 교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FKM이 AMZ의 최소 95%에 도달될때까지 재정 조정이 수행된다.

(6) 공동세중 부가가치세수입의 수직적인 배분에 있어서는 1992년의 경우 연방정부는 총 부가가치세수입의 65%를 배분받고 전체 주정부는 35%를 배분받도록 규정하였고 1993년과 1994년에는 연방정부가 총부가가치세수입의 63%를 전체 주정부는 37%를 할당받았고 1995년부터 부가가치세 배분비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해 각각 56%, 44%로 규정되었다.

동독지역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래 부가가치세 배분제도

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부가가치세의 배분비율이 결정됨으로서 서독지역으로부터 동독지역으로 큰 규모의 이전지출이 있게 된 것이다.

(7) 구동독지역 주들이 주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 포함됨에 있어서 베를린(Berlin)은 도시형 州로 그리고 맥클렌부르크-포뎬머른(Mecklenburg-Vorpomern)州는 항만을 가지고 있는 州로 취급되어 재정수요산출에 있어서 고려된다.

(8) 구동독지역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정적 교부금을 재정수요의 추이를 보면서 증액시킨다. 연방의 보정적 교부금은 부차적인 재정조정수단으로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연방은 1995년부터 구동서독지역의 재정력이 취약한 주정부에 이른 바 재정결손액 지원을 위한 보정적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주정부간 재정조정을 수행한 후 각 주정부들의 평균 재정력이하의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 취약한 주들이 평균 재정력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재원의 9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매년 약 50억-60억 마르크). 그렇게 함으로서 주정부간 재정력 순위는 지켜지게 된다. 즉 전체 주 평균 재정력이하의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 주

<표 14> 1995년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내용

(단위 : 마르크)

조 치 내 용	재정지원규모	수 혜 대 상
1. 투자촉진법에 의한 “동독지역 건설” 프로젝트	연 66억 (1995-2004)	동독지역주
2. 특별재정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연방의 보정적 교부금(정치권지원제외)	연 140억 (1995-2004)	동독지역주 재정력이 취약한 동서독주
3. 재정결손액 보전을 위한 연방의 보정적 교부금	약 50억-60억	재정력이 취약한 동서독주
4. 특별재정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연방의 보정적 교부금(정치권지원 포함)	약 15억 14억(1995),	재정력이 취약한 서독지역주
5. 과도기적 연방의 보정적 교부금	2004년까지 지원	Bremen주와 Saarland주
6. 특별 연방의 보정적 교부금	34억(1994-1998)	
7.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배분비율 상향조정(37%에서 44%)	-	동서독지역 주

자료 : BMF(1993)

의 재정력이 전체 주의 평균 재정력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오랫동안 동서독이 분단됨으로서 발생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서독지역과 비교해서 평균 이하의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 동독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특별재정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보정적 교부금을 매년 140억마르크 규모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재정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보정적 교부금의 경우 교부금 규모가 적다든지 시행하는 과정에

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1999년에 연방과 주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표 14>는 1995년도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내용을 개관하고 있다.

Ⅲ. 통독후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특징과 시사점

1. 특징

통독후 독일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독후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은 동독의 계획경제체제가 서독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동독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했던 중앙집권적 국가귀속방식의 재정체계의 개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제 1차 및 제 2차 국가조약의 합동의정서에 따라 동독지역에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민간주도 경제활동의 보장, 국가소유재산의 사유화, 가격자유화 등의 체제전환조치가 취해지면서 동시에 서독의 지방재정제도가 동독에 도입되게 되었다.

(2) 통독후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구 동독 경제를 재건하고 구동서독 지역주민간 생활수준의 격차를 감소시키며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3) 사전 예기치 못했던 동서독 통일은 통독 후 동독 지방재정 수요예측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동독 지방 행정단위의 재정관련 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독 지방정부 재정수요예측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통독직후부터 1990년 말까지의 재정수요와 초창기 통일기금규모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통독후 급증하는 동독 지방정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연방정부는 통독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기금을 증액시켰고 연방과 주정부간 협정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원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통독 직후 최초 회계연도인 1991년은 전 년도로부터 필요한 어떠한 기초자료도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였고 따라서 예산안과 결산자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4) 통일과 동시에 서독의 지방재정제도가 동독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실시가 곤란하여 일정기간동안 경과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지방재정수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공동세의 경우 동독주민의 낮은 소득수준과 기업의 순이윤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서독의 회계원칙에 따라 동독지역법인의 기업회계가 작성되어 법인세나 영업수익세를 부과하기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등을 고려해서 경과조치가 필요하였다.

(5) 통일과 함께 개편된 독일 지방재정제도의 주요 개편내용은 세제분야와 지방재정조정제도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방세제의 경우 동독지역에 대한 세제의 전면적인 실시가 어려워 1990년말까지 경과조치를 취했고 1991년 1월 1일부터 서독의 지방세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공동세중 소득세와 법인세가 동년 1월 1일부터 구동독지역에 적용되었고 동시에 주세중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제등이 동독지역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동독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서독기업이 동독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다. 1990년 7월 1일부터 구동독의 조세제도가 폐지되고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되던 과대한 조세부담이 해소되었고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구동독정부의 총 조세수입의 3/4이상을 부담해온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조세부담이 서독의 세제가 도입됨으로서 급격히 하락하여 경제하려는 의지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서독의 세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개인의 조세부담율도 크게 하락하였다. 통독전 동독의 소득세 부담율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양독일의 실효세율을 고려해 볼 때 크게 하락하게 되어 지역 주민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우 통독후 동서독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조

정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일정기간동안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대신 통일기금을 운용하였다. 통일기금 운용과 연방정부와 동독지역 지방정부간 수직적 재정조정이 수행되면서 동서독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가 감소되고 동독 주정부들의 재정력이 서독 주정부들의 재정력의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을 유예조치하였다.

특히 공동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수입 배분에 있어서는 통일후 지방재정의 취약함을 고려해서 연방정부에 대한 배분비율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전체 지방정부에 대한 배분비율을 높였다.

(6) 통독 초창기 조성된 통일기금은 동독지역의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증액되는 단계를 거쳤다. 1991년 2월 28일자 주지사협정, 1992년 3월 16일자 제1차 통일기금 증액결정 및 1993년 3월 연대협약으로 동독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7) 주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대신 단계적으로 도입된 통일기금조성을 위해서 구서독지역 주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우선 연방정부의 통일기금 출연금과 함께 서독지역 주정부들은 일정규모의 출연금을 부담했으

며 통일기금출연금증 자본시장에서 채무를 통해 조달된 일정규모의 출연금의 채무비용을 부담하였다. 또한 제1차 및 제2차 통일기금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공동으로 증액부담을 감당하였다.

(8) 1995년부터 통일기금의 역할이 종료되고 동서독 모든 주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동제도는 동독지역 재건과 동서독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서독지역 주정부들은 부가가치세수입 배분과정과 수평적 재정조정과정에서 재정조정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구동독지역 주정부들은 재정조정금 수취주가 되었다.

2. 시사점

통독후 독일의 지방재정분석 결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분석 뿐만 아니라 북한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독일의 사례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독일 통일의 사례분석과 기존 연구¹⁾ 및 한반도 현실을 고려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우선 독일의 지방재정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서로 상이하고 통일전개과정도 서로 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독일의 모든 사례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정분야의 독일통일의 경험을 우리가 완전 배제하고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통일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범한 오류를 우리는 다시 되풀이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며 통일시대 필요한 제도의 경우 독일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2) 우선 북한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문제이다²⁾. 독일의 경우 갑작스런 통일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

1) 이방식, 앞의 책 참조

2) 우리나라에서 북한지방재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북한재정에 관한 연구는 예컨대, 박진, 북한재정의 현황과 추이, KDI 정책보고서 94-93, 한국개발연구원, 1994/유경문, 통일 전후의 재정운용과 세제개편 방안,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제 12집 제 2호/김유찬, 독일 통일 3년에 대한 경제적 평가, 연구보고서 93-06, 한국조세연구원, 1993등 참조 북한지방재정에 관한 연구는 이방식, 앞의 책 등 참조

했고 따라서 동독 지방재정에 대한 자료나 연구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통독 후 동독 지방재정수요 예측이 정확치 않았고 부족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조치가 필요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북한지역 중앙재정을 비롯 지방행정단위의 재정수요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자료확보가 시급하다.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이나 점진적인 남북한 연합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통일방안이든 북한 지방재정의 현실과약을 위한 자료수집이 절실히 요청된다. 자료부족은 통일시대 북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책 제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앞으로 화해협력 및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책추진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우리 나라 연구기관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북한 지방재정의 실상을 파악, 통일 시나리오별 지방재정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3) 우리 나라의 경우는 햇볕정책과 6·15 선언으로 독일처럼 흡수통일이 불가능하고 당분간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경제교류와 남북한 연합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통일 시나리오별로 지방재정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통

일전 남북한 연합형태의 통일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 북한 지방행정단위와 직접교류가 아직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남북한 중앙당국간 수평적 재정조정이 불가피하다. 수평적 재정조정 수단으로 기존의 남북한 협력기금 운용 또는 독일의 통일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기금설립 및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존의 남북한 협력기금의 경우 최근 재원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독일 통일기금과 같은 유사한 기금이 설립될 경우 주로 북한 중앙당국이 재원 수취기관이 되고 남한 중앙당국은 재정지원기관이 된다. 물론 북한지원을 위해 새로 설립되는 기금은 독일 통일기금과는 재원조달, 운용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독일 통일기금의 경우 고통분담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원부담에 참여하였다. 우리의 경우 지방재정의 왜소성,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의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개혁이나 현행 지방재정의 문제점 해소없이 지방재정이 그러한 고통분담에 적극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우 제도적으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고 그러한 제도내에

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통일기금 설립과 재원분담이 가능하였다. 지방재정제도 개혁이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금 설립이나 운용, 특히 재원부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양한 분야의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남북한 지방행정단위간 교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 지자체와 북한 지방행정단위와 교류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남북한 중앙당국의 협조하에 남북한 지방행정단위간 수평적 재정조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 지방행정단위간 재정조정은 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통일을 향한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독일과 유사한 재정조정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 남한 지자체의 재정력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추가적으로 북한 지방행정단위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 지방재정제도 개혁 없이 그러한 남북한 교류는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결국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및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절실히 요청된다.

IV. 맺는 말

남북한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6·15 선언은 정치, 경제, 사회등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방재정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향후 햇볕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남북한 연합형태의 통일정책이 추진되면서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남북한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를 가정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의 지방재정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갑작스런 체제붕괴로 남북한 통일이 실현되고 북한지역에도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다고 할 경우 북한지역에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북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사전 예측하고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사전 예측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통독 후 독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최근 지방재정제도 개편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남북한 통일시대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통독 후 과도기 독일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해 본 것이다. 물론 북한의 지방재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독일의 지방재정체도가 서로 상이한 상황에서 분석 결과를 여과없이 우리 나라에 적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지역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유찬, 독일통일 3년에 대한 경제적 평가, 연구보고서 93-06, 한국조세연구원, 1993. 11.

독일경제사회통합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독일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1990. 12

박진, 북한재정의 현황과 추이, KDI 정책보고서 94-23, 한국개발연구원, 1994

박태규, 한반도 통일에 따른 소요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방안,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한국개발연구원, 1997

안두순, 한반도 통일국가의 경제체제, 제

4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한국정치학회, 1994. 7. 19-20. P. 2

유경문, 통일 전후의 재정운용과 세계개편 방안, 재정논집 제 12집 제 2호, 한국재정학회 1997. 12

이방식 편, 통일시대 재정제도 개편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1997

이방식,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으로 인한 우리 나라 시도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균등화효과 분석, 재정논집 제 10집, 한국재정학회, 1996

이방식, 지방재정조정론, 글마당, 1998.

이방식, 통일독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구동독지역 작센주정부 재정 및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제 13집 제 1호 1998. 6

이방식, 한반도통일과 지방재정제도 개편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연구 1998.

이방식, 통일독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통독후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주 재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제 4

권 1호 1999. 2
이방식, 통일과 지방재정, 어화, 2000. 2
조동호,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 한반
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한
국개발연구원, 1997

국외문헌

Buhl, H. U.(1986), Ein finan-
zwissenschaftlich-methodis-
cher Diskussionsbeitrag zur
Neuordn-ung des Laender-
finanzausgleichs, in: Finan-
zarchiv, Bd. 44.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rsg.), Finanzbericht...
(verschiedene Jahre), zitiert
als BMF, Finanzbericht...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1992), Gutachten zum
Laenderfinanzausgleich in
der Bundesrepublik Deut-
schland, Wissenschaftli-
cher Beirat beim Bundes-
ministerium der Finanzen.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1993), Die neue Finanz-
verteilung, Bonn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1995b), Beteiligungsbericht
1995, Bonn.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1996), Finanzpolitik 2000.
Neue Symmetrie zwischen
einem leistungsfahigen
Staat und einer wettbe-
werbsfaehigen Wirtschaft,
Bonn.

Bundesregierung(1995), Berichte
der Bundesregierung ueber
die Entwicklung der Fi-
nanz-hilfen des Bundes und
der Steuerverguensti-
gungen gemaess 12 StWG
(Fuenfzehnt-er Subvention
sbericht), BT- Drucksache
13/2230, Bonn

Bundesverfassungsgericht (1992),
Entscheidung des Bundes-
verfassungsgerichts vom 27.
Mai, 1992, Zweiter Senat,
Karlsruhe.

Deutsche Bundesbank, Ges-
chaeftsbericht der Deut-
schen Bundesbank fuer...
(verschiedene Jahre), Frank-
furt/M., zitiert als Deutsche

- Bundesbank, Geschaef-t-
sbericht...
- Deutsche Bundesbank, Monats-
berichte...(versch. Ausga-
ben), Frankfurt/M., zitiert
als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 Deutsche Institut fuer Wirt-
schaftsforschung, 1995, Ge-
samtwirtschaftliche und un-
ternehmerische Anpassung-
sfortschritte in Ostdeuts-
chland, Wochenbericht 3/95,
S. 71-98
- Deutscher Bundestag(1993), Besch-
lussempfehlung und Bericht
des Haushaltsausschusses,
in: Drucksachen BT-Drs.
12/4801 vom 18. 05. 1993
- Finanzausgleichsgesetz
- Finanzministeri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Fi-
nanzplan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1990-
1998, Duesseldorf
- Grossekettler, H.(1995), Oeffentliche
Finanzen, in: D. Bender u a.,
Vahlens Kompendium der
Wirtschaftstheorie und
Wirtschaftspolitik, 6. Aufl.,
Muenchen, S. 483-628.
- Grundgesetz
- Hansmeyer, K.-H.(Hrsg.)(1993a),
Finanzierungsprobleme der
Deutschen Einheit I: Staats-
verschuldung, EG- Re-
gionalfonds, Treuhandan-
stalt, Schriften des Vereins
fuer Socialpolitik, N.F. 229 I,
Berlin.
- Hansmeyer, K.-H.(1993b), Finan-
zierungsprobleme der Deut-
schen Einheit II: Aufbau
und Finan-zierung der
sozialen Sicherung, Schri-
ften des Vereins fuer
Socialpolitik, N.F. 229 II,
Berlin
- Henneke, H.-G., Oeffentliches
Finanzwesen, Finanzverfa-
ssung 1991.
- Lenk, T.(1993), Reformbedarf und
Reformmoeglichkeiten des
deutschen Finanzausgleichs,
in: Schriften zur oeffent-
lichen Verwaltung und

- oeffentlichen Wirtschaft, Bd. 138, Baden- Baden.
- Lenk, T.(1995), Vergleich alternativer Ausgleichsmechanismen fuer den Laenderfinanzausgleich, in: Zeitschrift fuer Wirtschafts- u. Sozialwissenschaften 115(1995), S. 231-273, Berlin.
- Oberhauser, A.(Hrsg.) (1995), Finanzierungsprobleme der Deutschen Einheit III: Ausbau der Infrastruktur und kommunaler Finanzausgleich, Schriften des Vereins fuer Socialpolitik, N. F. 229 III, Berlin
- Saechsisches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Hrsg.), 1991-1998, Mittelfristige Finanzplanung des Freistaats Sachsen, Dresden
- SVR(1990/91), Jahresgutachten 1990/91, Presse- und Informationsdienst der Bundesregierung Nr. 43, Bonn.
- Taube, R.(1990), Ein Vorschlag zur Reform des Laenderfinanzausgleichs, in: Wirtschaftsdienst VII, S. 372-380

시사용어 해설

• 감자칩 민주주의 (Couch-Potato Democracy) :

소파에 앉아 감자칩을 먹으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정치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 편집실 -